

이사회 규정

2026. 4. 28.



(제정 : 2003. 4. 30.)

(1 차 개정 : 2004. 1. 7.)

(2 차 개정 : 2004. 3. 9.)

(3 차 개정 : 2005. 10. 13.)

(4 차 개정 : 2005. 10. 27.)

(5 차 개정 : 2006. 3. 30.)

(6 차 개정 : 2008. 1. 31.)

(7 차 개정 : 2008. 3. 7.)

(8 차 개정 : 2008. 4. 22.)

(9 차 개정 : 2008. 5. 16.)

(10 차 개정 : 2009. 2. 19.)

(11 차 개정 : 2012. 5. 2.)

(12 차 개정 : 2017. 3. 3.)

(13 차 개정 : 2021. 3. 26.)

(14 차 개정 : 2021. 5. 27.)

(15 차 개정 : 2021. 12. 23.)

(16 차 개정 : 2023. 11. 29.)

(17 차 개정 : 2025. 3. 26.)

(18 차 개정 : 2026. 4.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정관 제 32 조에 의거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의 장】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한다. 동 의장은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며, 선임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장
 2. 사외이사후보추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3. 대표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제 3 장 회 의

제 5 조 【소 집】

- ①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통보】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7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소집통보는 서면 또는 인편 기타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 7 조 【의안 제출】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이유는 별첨 양식에 따라 각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업무 집행임원이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7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 ③ 간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는 이사회 부의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결의 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 9조 제 1항 제 1호 아목, 제 2호 마목 내지 사목, 제 3호 사목, 제 4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함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 9조 제 1항 제 4호 다목 및 바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결의 사항】

- ①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부의안건 채택 및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 나.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 다.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라. 이사회 연기 및 속행의 결의
 - 마.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바.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소송참가
 - 사.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아. 정관의 변경
 - 자. 지배구조현장, 이사회규정 및 정관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 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카. 이사 후보자 추천

- 타. 이 규정 제 12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 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2.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 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예산의 채택과 수정
- 나.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출자액의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자기자본’ 이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자기자본’ 을 의미함, 이하 같다)
-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산의 취득
단,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은 제외함.
- 마. 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합병완료 후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합병종료 공고의 실시 등 합병에 관한 사항
- 바.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 사. 다음 각 항목 중 1에 해당하는 사항
 - a.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b.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c.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 d. 양수하고자 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영업전부의 양수
 - e.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 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나. 주식의 배당
- 다. 자산재평가의 승인
-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 마.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

- 바.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사. 자본감소
- 아. 주식의 액면 분할 및 병합
- 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 차. 회사채의 발행
- 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타. 10 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 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파.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인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 하.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획(1년 이내의 단기 차입 제외)과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단, 담보가 확보된 분양계약 당사자를 위한 중도금대출지급보증 등은 제외함.
- 거. 이익배당한도내의 주식소각
- 너.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4. 인력 및 조직 관리 사항

- 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다. 이사의 경업 및 이사,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
- 라.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
- 마. 이사 해임안의 제출
- 바. 상법 제 397 조의 2 에서 규정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등 이용에 관한 승인
- 사.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 아.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5. 기타 주요 경영사항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또는 100 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시행 2024.1.1 >

- 나.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 다.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수정 결의
- 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제 9 조의 2 【보고 사항】

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2.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 보고
4. 반기별 회사의 손익실적사항
5. (삭제, 2021.12.23)
6. 기타 이사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
7. (삭제, 2021.12.23)
8.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ESG 관점에서 회사의 중요 Risk 요인 검토 및 관리
9.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반기 1 회 보고한다.

제 10 조 (삭제, 2021.3.26.)

제 10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의로써 새로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3. (삭제, 2021.12.23)
4. (삭제, 2025.03.26)
5. 기타 필요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12.23)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둔다.

⑦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의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사회 결의 외 사항】

제 9 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고 이를 결정·집행한다.

제 12 조의 2 【경영철학의 실행】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 13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 및 지배구조현장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특히 주주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총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해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⑥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 ⑦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

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5 조 【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제 16 조 【간 사】

- ① 이사회에 이사회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이사회사무국을 둔다.
-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으로서 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2003. 4.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7.)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9.)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7.)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19.)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2.)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1.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1.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3. 11.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5.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6.4.28)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